

공적 부조 심사에서는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이 향후 주로 정부 지원에 의존하게 될지를 고려합니다. 입국심사관은 신청인의 전반적인 사정을 검토하고 신청인이 두 가지 특정 유형의 혜택을 이전에 받은 적이 있는지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향후 정부 지원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입국심사관은 그 사람의 미국 입국 허가를 거부하거나 영주권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공적 부조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공적 부조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외국에서 미국에 입국하려는 사람은 공적 부조 심사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아래 목록 참조)은 심사가 면제됩니다.

다음 범주에 속하는 이민자는 **공적 부조 심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 망명자
- 난민
- U 또는 T 비자 신청자 및 소지자(인신매매 또는 범죄 피해자)
- VAWA 독자 청원자
- 특별 이민 청소년 신분(SIJS)을 신청하거나 인정받은 사람

다음을 신청하는 이민자는 **공적 부조 심사를 거치지 않습니다.**

- 미국 시민권
- 영주권 갱신
- 망명,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임시보호신분(TPS) 또는 인도적 구호(DED)(최초 신청 및 갱신)

어떤 혜택이 고려대상이 되나요?

2

입국심사관은 영주권 신청인이 받은 혜택만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이름이 가족 구성원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다른 가족 또는 가족 구성원이 받고 있는 혜택은 고려할 수 없습니다. 가족 초청 영주권을 신청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혜택 프로그램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입국심사관은 **두 가지 유형의 혜택만**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을 돕는 매월 현금 지원 여기에는 생활보조금(SSI), 빈곤가정 임시지원(TANF), 주 및 지방 현금 지원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2. 정부가 비용을 대는 장기 시설 요양



입국심사관은 공적 부조 심사에 다음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메디케이드, 응급 메디케이드, 아동건강보험 프로그램(CHIP), 주 및 지방 건강 관리 프로그램(장기 입원 이외의 서비스 프로그램), 기타 건강 보험 (Healthcare.gov 및 기타 의료 서비스를 통해 가입한 보험의 보조금 포함)



보충영양지원 프로그램(SNAP), 여성, 유아 및 아동 대상 특별 영양 보충 프로그램(WIC), 학교급식 프로그램 및 일반급식(food banks)과 같은 영양지원 프로그램



섹션 8 및 공공주택과 같은 주택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



코로나19 백신, 검사 및 치료, P-EBT(전염병 상황에서 학교 급식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식료품 구매비를 지원하는 제도), 경기부양 지원금, 자녀 세액 공제, 긴급 임대료 지원



기타 주 비현금 지원 프로그램



사회보장연금, 퇴직수당, 연금, 참전용사 수당을 포함하여 근로나 소득을 기반으로 한 현금 수당

3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입국심사관은 초청인(보통 가족 구성원)이 미국으로 영구적으로 이주하는 사람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수용할 의도로 서명하는 계약인 재정보증서를 고려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위에 나열한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라도 입국심사관은 신청인에 관한 전반적인 정보를 검토하여 신청인이 향후 공적 부조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과거에 공적 부조를 받은 사실은 기타 가산점 요소보다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적 부조 심사에서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소득
- 취업상태
- 학력
- 건강
- 가족관계
- 재정보증서

이민자에게 공적 부조 또는 이민 신분에 관한 문제가 있다면 믿을 만한 법률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경우 공적 부조를 받은 이력은 이민자의 법적 지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더 다양한 언어로 된 업데이트된 정보와 리소스는 pifcoalition.org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